

마이데이터(세연 혜승 효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사물인 터넷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자원으로 활용되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1)이 조사한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의 규모는 2019년 전년 대비 8.3% 성장한 16조 8,582억 원이며, 2020년에는 19조 2,736억 원 규모로 추정됐다. 향후 데이터 산업 시장이 지난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인 11.3%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2026년까지 3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mark>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의 2011년 발표</mark>에 따르면, 디지털 데이터 중 개인데이터의 비중이 약 75%에 달하며, 이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신 자료 함 찾아보기)

개인 데이터는 개인의 행위로 생성되는 데이터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 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활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라 는 양 측면을 고려하고 디지털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이데이터 접근 방 식이 제시되고 있다.

개요(등장배경)정의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를 언급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데이터 3법이다. 데이터 3법에서 마이데이터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의 중복을 막고, 개인과 기업이 정보 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데이터 3법의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개념이 생겼다. 이제 마이데이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마이데이터 정의

마이데이터는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의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에 근거하여 개인이 본인 데이터의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 통신사, 카드사, 보험사 등 다양한 분야에 보유 중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한 곳에 모아 두고, 신용이나 자산관리 컨설팅과 같은 상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때 자발적으로 제공해 사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마이데이터란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개념으로, 개인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되는 체계를 기관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즉,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등장 배경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보주체인 개인이 소외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데이터, 즉 개인정보들은 구매 또는 대출 기록, 신용도 등의 형태로 저장되어 개인이 은행, 통신사, 카드사, 보험사 등 기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부터, 기업이 개인에게 광고나 마케팅을 하는 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런데 온갖 분야에서 방대하게 생산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개인이 자기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마저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데이터 기반 혁신의 혜택을 정보주체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 려가 제기되었다. 게다가 기업들의 이용자 수에 따라 정보력 차이가 나게 되고 시장 독점의 형태가 구성되어, 갈수록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적 측면이 발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두 번째로 금융분야의 경우 구조가 복잡하고 표준화가 어려운 업계 특성으로 소비자 보호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금융분야 소비자에겐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정보 우위에 있는 금융회사로부터 적합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했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로 정보주체의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의 구조적인 정보열위를 완화해 주는 산업적 기반이 미흡했다.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이 출현해 개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지원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국내 역시 이와 관련한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정보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금융소비자의 보호, 정보주체의 데이터 관리/활용 지원의 안전한 산업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마이데이터 동향+사례 (법률 위주 / 가이드라 인에서 사례를 들어 마이데이터 보안의 중요 성 강조)

동향

국내 동향

2021년 12월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시작 이후, 사업자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 핀테크 등이 시범 운영에 참여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 중이다.

2022년 2월 기준, 1,840만명(중복집계, 사업자 약관동의 기준)이 마이데이터에 가입 중이며, 125억건의 데이터가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이익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비금융권 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마련, 보안인력 양성 등 정책적인 보완을 요구하였다.

(1) KDB미래전략연구소. (2022).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국내 현황

사례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자산 내역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활성화된 사업군은 금융권이다.

편의성은 극대화 되었지만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몰리는 만큼 보안의 중요성이 커졌다.

개인 정보 유출 사례

모니모

(2) 장은진. (2022, July 5). [마이데이터, 명과 암①] "누구의 책임인가"...데이터 공유·협업, 개인정보 유출 초래. Retrieved November 6, 2022, from https://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27830

2022년 4월 18일, 삼성 금융 통합앱 '모니모'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총 344명의 고객 이름, 보유 주식, 거래 내역, 잔고 등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유출사고 발생 이후의 후속조치도 문제였다. 모니모 앱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4월18일 오후 6시경이다. 삼성 측에서 문제를 파악한 후 다음날 사건은 해결됐으나, 사건에 대한 경위는 4월 20일 '삼성증권' 홈페이지에만 올라왔다.

계속되는 이용자들의 불안에 금융계열 4개사의 모든 홈페이지에 사건 경위를 포함한 입장문이 올라왔다. 유출 피해자에겐 사고 즉시 사건에 대해 알렸다고 하지만 안일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

같은 그룹사 간 협업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타사와 협업을 진행할 경우 책임 소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 고객을 위한 보상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법적 규제는 마련되어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은 개발자가 지게 된다. 모니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법적 책임은 앱 개발사인 '삼성카드'에게 있는 것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삼성 모니모 앱 사태의 경우 사고 직후 피해고객에게 삼성증권에서 직접 통보했다는 점에서 사후처리에 높은 점수를 줄만 하지만 그 역할을 '삼성카드'가 했어야 했다"면서 "기업조차 사후 처리에 대해 혼동하는데 피해고객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항의하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부수업무, 겸영업무 혼동 우려(?)

(3) 김재영. (2021). 마이데이터 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고유업무 뿐만 아니라 겸영/부수업무로 연계된 내용이 많은데, 소비자가 부수/겸영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정보제공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부록 2]"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정보)전송 표준전송요구서 및 표준동의서에

첫째,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단계의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가입 시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동의는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수령하도록 하고,

둘째, 본업인 통합조회 서비스 이외의 겸영 및 부수 업무 제공에 필요한 동의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의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것인지, 겸영 및 부수 업무를 위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부수업무:

겸영업무:

보안

보안업계와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2021년 12월)을 앞두고 있던 2021년 9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5개 분야, 375개 항목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사업자는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와 관련한 시스템일체(응용 프로그램, DB, 웹서버, 정보보호 시스템)를 필수로 갖춘 후 금융보안원 등 27개 외부 평가 전문 기관을 통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금융보안원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API 규격 기능 적합성 심사에서도 통과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보안업계는 사업자들의 보안 솔루션 수요가 늘어 시장 규모가 크게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온화이트햇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전인 2021년 4월 말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위한 보안 취약점 진단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독자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조직과 자산 등을 면밀히 분석해, 위협 및 취약점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설계한다.

파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내 정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개인정보 비식별 컨설팅과 보안 취약점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체 처리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비식별 처리 위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SK쉴더스는 마이데이터 사업 인허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 금융 보안 컨설팅에 있어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한 점을 내세워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한 컨설팅 방법론 및 점검 도구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빅테크, 의료업계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추가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합류할 것을 감안하면, 마이데이터 사업 내의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시장 규모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외국법 추가

법적기반

1. EU - GDPR

제 20조 개인정보보호권의 하나로 포함된 개인정보이동권

2. 신용정보법

2-1. 신용정보법과 GDPR의 차이점

마이데이터 시대

개인이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추천해주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산업도 함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단, 모든 정보를 아무에게나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거래정보, 국세,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 정보, 통신비 납부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가 지정한 기업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 되면

- 1. 모든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나의 신용/자산 분석이 가능해진다.
- 3.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4. 금융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해외는?

유럽연합(EU)이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EU가 2016년 제정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는 데이터 전송 요구권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이 요청할 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금융기관 등)은 제 3자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영국은 2011년 4월, 모든 산업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2016년에는 고객의 데이터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정보까지 제3자에게 API로 제공하도록 하는 오픈뱅킹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복잡한 금융상품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하게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데이터 3법과 함께 등장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의 개정안

→ 개정목적 : 4차 산업혁명 활성화

🖺 혜승

🧪 효림

🌲 세연

참고 + ::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란? (등장배경/이점)

마이데이터 발전 방향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mydatacenter.or.kr)

[보안동향] 금융의 판을 바꾸는 '마이데이터', 개념부터 보안까지!! (lgcns.com)

: 개념, 등장배경, 기대효과, 인증, 보안, 보호장치

[포커스온] 거대해지는 마이데이터 속 작아지는 개인정보 - CCTV뉴스 - 곽중희 기자 (cctvnews.co.kr)

: 보안이슈와 전망

당신의 개인 정보는 6만 9000원입니다 [뉴스 쉽게보기] - 매경프리미엄 (mk.co.kr)

: 토스 이슈와 마이데이터, 데이터 3법에 대해 읽기 쉽게 서술한 기사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 menukey=6101&fno=10033048&bid=00000146&did=1003270125

: 마이데이터 서비스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마이데이터 동향 - 법 제도와 사례)

https://rd.kdb.co.kr/fileView?groupId=EF14DBCA-422F-F945-B01B-466DD0BB0606&fileId=3BCE2829-FADF-41FF-725B-BD4583A58AC9

: 마이데이터 국내외 현황 및 주요 해외 사례

에이터_3법_이후_마이데이터.pdf 440.5KB